

款 定

財團
法人 會學獎泉曉工論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 정관

목 차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제 2 조	명 칭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
제 4 조	사 업	-----
제 5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

제2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 산 의 구 분	-----
제 7 조	재 산 의 관 리	-----
제 8 조	재 산 의 평 가	-----
제 9 조	경 비 의 조 달 방 법 등	-----
제 10 조	회 계 의 구 분	-----
제 11 조	회 계 원 칙	-----
제 12 조	회 계 연 도	-----
제 13 조	예 산 외 의 채 무 부 담 등	-----
제 14 조	임 원 의 보 수 제 한 등	-----
제 15 조	임 원 등 에 대 한 재 산 대 여 금 지	-----

제3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제 17 조	상임이사	-----
제 18 조	임원의 임기	-----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
제 20 조	임원선임의 제한	-----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제 22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제 24 조	감사의 직무	-----

제4장 이사회

제 25 조	이사회	-----
제 26 조	이사의 기능	-----
제 27 조	의결정족수	-----
제 28 조	의결제척사유	-----
제 29 조	회기	-----
제 30 조	이사의 소집	-----
제 3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제 32 조	서면금지	-----

제5장 보 칙

제 33 조	정관의 변경	-----
--------	--------	-------

제 34 조 해 산 - - - - -

제 35 조 잔 여 재 산 의 귀 속 - - - - -

제 36 조 시 행 세 칙 - - - - -

제 37 조 공 고 사 항 및 방 법 - - - - -

제 38 조 설 립 당 초 의 임 원 및 임 기 - - - - -

정 관

(제정 2009. 3. 20. 개정 2009. 7.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효심이 깊은 학업성적 우수자 및 예.체능 특기자로 학업을 계속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원하여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여 궁극적으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論工曉泉獎學會)”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98번지 논공읍사무소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학술연구활동의 지원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행한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달성군 논공읍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달성군 논공읍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는 논공읍민과 그의 자녀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수혜자의 범위를 달성군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법인 논공효천장학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이 법인의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

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부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인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 (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제1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이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2인
 2. 감사 2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 ③ 이사 중 현직 농공읍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17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 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임기전에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에서 정한 이사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임원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제21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

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3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4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① 이 법인은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6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를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를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서면결의) 이사회를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33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귀속한다.

제36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를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설립
2.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3. 법인의 해산

4.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38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비 고
이사장	이상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1288	4년	
이 사	차종락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224-21	4년	
“	허 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608	4년	
“	이점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861	4년	
“	배중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2047	4년	
“	송성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805-1	4년	
	한임개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강림리 293	4년	
“	김무열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805	4년	
“	백명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2004-4	4년	
	김성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304	4년	
“	조현돌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293	4년	
“	김판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578-4	4년	
감 사	최삼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42 보성은하A 105/1102	2년	
“	김성택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남리 224-116 경일A 5/405	2년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목록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09년 3월 20일 설립)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부동산 (건물 및 대지)	1동	352,626,930원	
합 계	1동	352,626,93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부동산 (건물 및 대지)	논공을 남리 1108 (건물 및 대지)	1동 (962.43㎡)		352,626,930원	
합 계	건물	1동		352,626,930원	

현재의 기본재산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2019년 1월 일 현재)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
부동산 (건물 및 대지)	1	352,626,930원	
동 산(현금)	3계좌	700,000,000원	
합 계		1,052,626,930원	

2. 기본재산 세부목록표

재 산 명	종별(소재지.지목)	수 량 (지 적)	단 가	평 가 액	비 고
부동산 (건물 및 대지)	논공읍 남리 1108 (건물 및 대지)	1동 (962.43㎡)		352,626,930원	
동산(현금)	3계좌 (농협1,새마을금고2)	3계좌		700,000,000원	
합 계	현금	1동		1,052,626,930원	